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30.] [대통령령 제35783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행정자료 등 기존 자료를 집계하거나 가공하여 작성하는 방식의 '비조사통계'가 확대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에게 통계작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조사통계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비조사통계는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승인 신청 절차를 구분함으로써 조사통계와 비조사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 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 대통령령 제35783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6호 중 "동거인·부모의 취업 활동"을 "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동거인"으로 한다.

제2조의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제4호 중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을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통계작성기관의 장은"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을 "조사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통계작성기관의 장은"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로, "중지에 대하여"를 "중지"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을 "조사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을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를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로, "협의를 요청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을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의2 중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4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을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으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의3제4항 중 "부담시킬"을 "요청기관에 부담시킬"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부담시킬"을 "요청기관에 부담시킬"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 활용 관련"을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으로 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별표 제2호사목9)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